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4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조정식・민병덕・정을호

백승아 · 정성호 · 부승찬

황우하 · 서미화 · 김성환

문진석 • 이기헌 • 염태영

김재원 · 황 희 · 이재관

이병진 • 윤종군 의원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로 한 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 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초일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장애인 고 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 휴직 등의 활용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 면할 수 있다.
-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 3.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 장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 인복지법 . 제58조제1항제3호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 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 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 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 을 납품받는 사업주 3.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 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⑤ ~ ⑪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